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8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9. 11. 29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3항에서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15조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계약해지 사유 외의 사유를 위탁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인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제3항 의거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(위탁의 해지) 개정
- 나. (안 제15조제1항1호)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- 다. (안 제15조제1항2호)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19. 10. 14. ~ 11. 4.)결과 : 의견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제15조(위탁의 해지)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5조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 사유로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”를 제1항의 사유로 위탁계약을“로 한다.

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 (위탁의 취소 또는 해지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 1.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.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,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. 수탁자에게 재활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. 수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. 공익상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가 제1항제1호부터 같은항제4호까지 사유로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③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5조 (위탁의 해지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 1. 제5조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-----제1항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<삭제>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